영어로 Corporation이라고 불리우는주식회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자로는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탄생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주식회사는 설립자와는 구별되는, 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점이 매력적이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론적으로만 정의한다면, 사업이 잘 안되어, 회사가 빚을 많이 지더라도, 주주의 개인 재산에는 채권자가 손을 못댄다는 것이,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주가 일곱명 이상 이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주주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설립을 하기위해 주정부에 등록을 할 수있는 사람은, 주주 자신과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하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보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채권자로부터, 주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게 자리나 사무실자리를 계약하려 해도 주식회사는 아직 걸음마도 안 뗀 어린아이인데, 어떤 건물주가 리즈 계약을 해주겠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월세를 안 낼 경우, 별도 재산도 없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밀린 월세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물주는 회사의 주주가 Personal Guarantee라고 불리우는 보증을 서지 않으면, 리즈계약을 해주지 않게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를 만든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아주 오래되고, 회사 재산이 많기 전에는, 은행에서는 Personal Guarantee라는 보증을 원하게됩니다.

그외에도, 예를들어,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도매상에서 사온 물건 값이 많이 밀려,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소매점을 파산을 통하여 폐업을 한다고 할 때,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채권자는 회사가 파산을 했으므로, 더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주주를 고소하여, 밀린 외상값을 받으려 하게됩니다. 재판을 하게되면, 판사는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회사 크레딧이 얼마나 좋았는지, 회사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주 총회나 이사회록등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회사 공금으로 주주의 개인용도로 돈을 쓴적이 있는지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주주가 개인적으로 밀린 외상값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볼때, 이런 경우 판사는, 주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이있다는 판결을 내릴 확율이 높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전분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